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8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공직자윤리법」상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2조).

- 1) 민간위원 수: (현행) 7명 → (개정) 9명
- 2) 총 위원 수 : (현행) 11명 → (개정) 13명
-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
- 다. 조례 개정사항을 「공직자윤리법」 개정('21. 6. 23. 시행)에 맞추어 시행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1. 28.~2. 17.)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를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로, "제2조 에"를 "제2조에"로, "추천한자"를 "추천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공직자	제2조(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	
여 <u>11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13명</u>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u>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u> 및	1. <u>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u>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u>사, 교육자</u>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u>제2</u>	<u>제2</u>
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조에
서 <u>추천한자</u> 중에서 서울특별	<u>추천한 자</u>
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생특희 공작원래원회 건 및 원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도록 하여 위원회 개최 시참석·심사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안 제2조).

2. 미첩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이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함.

- ▶ 조례(안)으로 발생되는 비용 총액(연간) : 2,500천원
 - 연간 수당 : 250,000원×2명×5회 = 2,500천원
 - ※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2021년 운영일정에 따라 연 5회로 적용하였으며, 2시간 이상 개최하여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최대)로 적용하였음.

4. 작성자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홍제희(02-2133-3161)